

▶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

1. 계약목적 :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어르신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① 어르신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2. 계약기간

-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,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는 인정서 갱신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(등외 판정),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,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
가.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
나.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.

다.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

* 준수사항

-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,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.
-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.
(단, 계약서에는 기간, 급여의 종류, 급여비용, 비급여, 개인정보보호, 분쟁해결,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.)

▶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

- ①서비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, 본인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별 수가로 한다.

본인부담금 내역	기초수급자	0% 부담
	경감대상자	8% 부담
		12% 부담
	일반수급자	20% 부담

② 그 밖의 비급여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

비급여항목	금액(원)	내용
식재료비	3,500	1식
간식비	2,400	2회
이미용비	0	

▶ **신원인수인의 권리 · 의무**

1. 신원인수인의 권리: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의 권리를 가진다.
 - 1)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2)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
 - 3) 원내 생활의 편익을 위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
 - 4) 수급자(보호자)의 필요한 의한 자유로운 퇴소·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 - 5)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
 - 6)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권리 요구
2. 신원인수인의 의무: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)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이행한다.
 - 2) 보호자는 이용계약과 동시에 이용자가 안정된 기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.
 - 4) 보호자는 기관을 방문하였을 시에는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.
 - 5)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, 약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다.
 - 6)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기관의 관리자와 상의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.
 - 7)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급여수가에 따른 금액의 자부담과 비급여부담분을 매월 수납한다.
 - 8)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다.
 - 9)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.
 - 10) 장기 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(부양의무자)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
▶ 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

서비스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1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(단, 병·의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③ 표준 급여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2.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무

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-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

3. 이용자의 권리

-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-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- ⑦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- ⑧ 본 기관을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
▶ 계약의 해제

- 1. 수급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2.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- (1) 이용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, 부당한 방법으로 기관을 이용하였을 경우
 - (2) 이용료 또는 기관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

- (3) 이용료 또는 기관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에서 판단된 경우
- (4) 수급자가 법정전염병 소지자로 판정될 경우
- (5)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
- (6) 수급자가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
- (7)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
- (8) 수급자(보호자)의 해제 통지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
- (9)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

1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

- (1)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변경내용 적용 전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고, 신원인수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 변경하도록 한다.
- (2) 이용료 변경 시 보호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
2. 변경절차

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발생 → 수급자(보호자)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 → 이용계약서 재계약 →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통보

▶ 시설급여 2026년 수가산정에 따른 급여비용 반영

	등급	일수가	급여비용		
			공단	자부담 20%	감경대상자 12% / 8%
공단 산정 금액	1등급	93,070	2,792,100	558,420	335,050 / 223,360
	2등급	86,340	2,590,200	518,040	310,820 / 207,210
	3~5 등급	81,540	2,446,200	489,240	293,540 / 195,690

비급여	상급병실 이용료	10,000원×30일 = 300,000원
	식재료비	3,500원×3식=10,500원 315,000원(30일)
	간식비	1,200원×2회=2,400원 72,000원(30일)
	이/미용료	무료